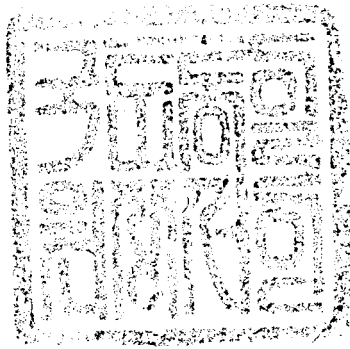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1989



국 토 통 일 원



# 차 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3
1. 南北交流協力推進 基本方向	3
2. 施行方針	3
3. 施行節次	8
南北交流協力細部施行指針	14
l. 目的	14
ll. 南北韓住民간接觸	14
lll. 人的往來	18
IV. 物資交易	27
V. 協力事業	30
VI. 南北交流協力の 管理·支援	34
附錄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37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大統領特別指示, 1989. 6. 12)

## 1. 南北交流協力推進 基本方向

가. 南北交流協力は 7.7宣言의 精神을 바탕으로 그 具體的 實現을 위해 推進되어야 한다.

나. 南北交流協力は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와 國民的 合意에 基礎하여, 南北韓 住民의 福利增進과 民族同質性 回復 및 平和統一에 寄與하는 方向으로 推進되어야 한다.

다. 南北交流協力は 統一政策의 推進主體인 政府의 承認과 指導下에 이루어져야 한다.

## 2. 施行方針

### 가. 目的

(1) 本 指針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特別法』등 關係法令 整備 以前까지 南韓과 北韓間의 交流協力推進에 관한 諸般事項을 規定하기 위함.

## 나. 用語의 定義

(1) 本 指針에서 使用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음.

- ‘南韓’이라 함은 軍事分界線 以南地域을 말하며, ‘北韓’이라 함은 軍事分界線 以北地域을 말함.
- ‘南韓住民’이라 함은 南韓에 籍을 둔 住民(法人·團體 包含, 이하 같음)을 말하며, ‘北韓住民’이라 함은 北韓에 籍을 둔 住民을 말함.
- ‘人的往來’라 함은 南北韓間 住民의 親戚訪問, 觀光, 物資交易, 協力事業 등을 위한 相互訪問을 말함.
- ‘物資交易’이라 함은 南北韓間 物品의 搬出·搬入을 말함.
- ‘協力事業’이라 함은 南北韓間(第3國參加 包含) 文化·體育·學術·經濟(資源開發, 合作投資, 技術援助, 技術協力, 觀光開發, 共同海外投資 등)分野 등에서 共同으로 행하는 事業을 말함.

## 다. 南北韓住民間 接觸

(1) 人的往來, 協力事業 및 其他 目的을 위한 南北韓

住民間 接觸(會合·通信交流 包含, 이하 같음)은 政府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라. 人的往來

- (1) 南北韓間 人的往來는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大統領令 12670號, 1989. 3. 31)의 審議를 거쳐 國土統一院長官이 承認함.

마. 物資交易

- (1) 南北韓間 物資交易은 政府가 既發表(1988. 10. 18), 施行하고 있는 『南北物資交流運營制度』에 따라 施行함.

바. 協力事業

- (1) 南北韓間 協力事業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主務部處의 長이 承認함.

사. 在外國民의 人的往來 및 接觸

- (1) 居住旅券을 所持한 在外國民이 北韓을 訪問하거나 協力事業 또는 其他 目的을 위해 北韓住民과 接觸하고자 할 경우에는 事前 및 事後에 在外公館의 長에게 申告하여야 함.

## 아. 當局間 合意에 의한 南北交流協力

- (1) 南北交流協力에 관하여 南北韓 當局間 別途의 合意가 있는 경우에는 本 指針에서 정하는 節次를 省略할 수 있음.

## 자.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事項의 委任

- (1)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の 促進과 效率的 推進을 위해 必要한 경우에는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範圍를 정하여 南北交流協力 推進에 관한 事項을 民間機構(法人·團體 包含, 이하 같음)에 委任할 수 있음.

## 차. 南北交流協力の 管理·支援

- (1) 國土統一院長官은 南北交流協力에 따르는 通信, 通行, 身邊安全 등에 관한 管理·支援을 하며, 이를 위해 關聯部處에 協調를 要請할 수 있음.

## 카. 南北交流協力の 秩序維持

- (1) 政府는 南北交流協力 內容이 本 指針의 基本方向과 節次에 違背된 경우에는 그 承認을 取消하고 其他 必要한 措置를 취할 수 있음.



(2)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の 促進과 秩序維持를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경우 交流協力の 結果에 대한 報告書 提出 등 事後管理 措置를 취할 수 있음.

### 3. 施行節次

#### 가. 南北韓住民間 接觸

##### (1) 南北韓住民間 接觸의 承認

- 人的往來 또는 其他 目的(物資交易, 協力事業 除外)을 위해 北韓住民 또는 그 代理人과 北韓 以外의 地域에서 接觸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統一院長官에게 承認을 申請함.
- 協力事業을 목적으로 北韓住民 또는 그 代理人과 北韓以外의 地域에서 接觸하고자 하는 者는 그 事業의 承認 또는 許可를 擔當하고 있는 主務部處의 長에게 承認을 申請함.
- 承認部處의 長은 關係部處와 協議하여 南北韓住民間 接觸의 事前承認 與否를 決定하고,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報함.
- 南北物資交易을 위해 北韓住民과 北韓以外의 地域에서 接觸하고자 하는 者는 事前 또는 事後에 在外公館長 또는 商工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함.

## 나. 人的往來

### (1) 北韓訪問 承認申請

- 北韓을 訪問하고자 하는 者는 訪問豫定日 4週前 까지 訪問目的에 따라 該當 主務部處를 經유하여 國土統一院長官에게 北韓訪問 承認을 申請함.
- 北韓訪問 承認申請 節次 및 具備事項은 國土統一院長官이 定함.

### (2) 北韓訪問 承認申請 處理

- 國土統一院長官은 위의 申請事項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上程하고, 同 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北韓訪問 承認與否를 決定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北韓訪問을 承認한 者에게 訪問證明書を 發給함.

### (3) 北韓住民의 招請

- 北韓住民을 招請하고자 하는 者는 國土統一院長官에게 招請承認을 申請함.
- 物資交易 또는 協力事業을 目的으로 北韓住民을 招請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該當 主務部處를 經

- 유 國土統一院長官에게 申請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위의 申請事項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上程하고, 同 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招請承認 與否를 決定하여 申請人에게 通報함.
  - 北韓住民의 招請承認 申請節次 및 具備事項은 國土統一院長官이 정함.
- (4)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承認申請
- 南韓을 訪問하고자 하는 北韓住民은 國土統一院長官에게 訪問 承認을 申請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위 申請事項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上程하고, 同 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訪問承認 與否를 決定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南韓訪問을 承認한 者에게 訪問證明書を 發給함.
  -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承認申請은 南韓의 招請者가 代행할 수 있음.
  -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承認申請 節次 및 具備事項은 國土統一院長官이 定함.

## 다. 物資交易

### (1) 物資交易의 承認申請

- 對外貿易法에 의해 貿易業 許可를 받은 者 中 南韓으로부터 北韓으로 또는 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物資를 搬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輸出入承認機關의 長에게 承認을 申請함.

### (2) 承認申請의 處理

- 承認機關의 長은 商工部長官이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별도로 정한 基準에 따라 承認與否를 決定함.
- 承認機關의 長은 搬出入을 承認한 경우 承認書上에 “南北韓交易 對象物品”임을 表示하여 申請人에게 交付함.

### (3) 交易物品의 關稅 및 防衛稅 非課稅

- 南北韓間 直交易(第3國 單純經由 包含) 物品에 대해서는 內國 物品移動으로 간주하여 關稅 및 防衛稅를 賦課하지 않음.
- 第3國으로 輸出된 後 南韓에 搬入되는 北韓 物品이 關稅法 第34條 規定의 再輸入 減免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 規定을 援용함.

## 라. 協力事業

### (1) 協力事業의 事前承認

- 南北協力事業을 推進하고자 하는 者는 協議를 進行하기 전에 그 事業의 承認 또는 許可를 담당하는 主務部處의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 主務部處의 長은 國土統一院長官 및 關係部處의 長과 協議하여 協力事業의 事前承認 與否를 決定하여 申請人에게 通報함.

### (2) 協力事業의 承認申請

- 南北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하여 主務部處의 長에게 承認을 申請함.
  - 協力事業의 內容 및 方法
  - 事業豫定期間
  - 協力事業에 必要한 人員
  - 資金計劃
  - 北韓側 事業相對者와의 協議書(意向書)

- 北韓側 事業相對者에 대한 事項
- 北韓當局의 確認書
- 其他 主務部處의 長이 協力事業의 審査를 위해 必要하다고 認定하여 要求하는 事項

(3) 承認申請의 處理

- 主務部處의 長은 南北協力事業 承認申請에 대해 意見書를 添附하여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上程하고, 同 協議會는 다음 基準에 따라 審議함.
  - 事業의 妥當性和 實現可能性
  - 協力事業과 關聯된 申請人의 事業實績 또는 活動內容
  - 其他 協議會의 決定으로 定한 基準
- 主務部處의 長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承認與否를 決定하여 申請人에게 通報함.

# 南北交流協力細部施行指針

(1989. 7. 21 시행)

## I. 目 的

- 本 細部施行指針은 「南北交流協力에 관한基本指針」(大統領特別指示, 1989.6.12)의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하기 위함.

## II. 南北韓住民間 接觸

### 1. 南北韓住民間 接觸의 承認

- 南北物資交易 이외의 目的으로 北韓住民 또는 그 代理人과 北韓이외의 지역에서 접촉하고자 하는 者(居住旅券 所持 在外國民 除外)는 北韓住民接觸 承認申請書를 작성하여 그 目的에 따라 協力事業 目的인 경우에는 해당 主務部處의 長에게, 人的往來 또는 기타 目的인 경우에는 國土統一院長官에게 承認을 신청함.
- 北韓의 參加가 예상되는 國際行事的 參加를 政府로부터 承認받은 경우 또는 海外旅行中 北韓住民



과 特定한 目的없이 偶發的으로 接觸한 경우에는 별도의 承認없이 北韓住民과의 接觸이 가능하도록 함.

- 承認部處(이하 南北交流協力에 대한 承認을 擔當하는 部處를 “承認部處”라 칭함)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申請日로부터 3週이내에 承認與否를 결정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報함.
- 申請人이 海外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在外公館長에게 申請書를 제출하도록 하며, 이때 신청서를 접수한 在外公館長은 承認部處에 承認與否를 問議하여, 그 結果를 申請人에게 通報함.

## 2. 南北韓住民間 接觸의 申告

- 南北物資交易을 위해 北韓住民과 接觸하고자 하는 者는 北韓住民接觸申告書를 商工部長官 또는 在外公館長에게 提出하여야 함.
- 居住旅券을 소지한 在外國民이 南北人的往來, 協力事業 기타 特定한 目的을 위해 北韓住民과 接觸하고자 할 경우에는 北韓住民接觸申告書를 在外公館長에게 제출하여야 함.
- 南北物資交易을 위해 北韓住民과 接觸하고자 하는

者が 부득이한 事由로 北韓住民과의 接觸前에 北韓住民接觸申告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書信, 電話 기타 가능한 方法으로 北韓住民接觸申告書 提出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

居住旅券을 소지한 在外國民이 부득이한 事由로 北韓住民과 接觸前에 北韓住民接觸申告書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또한 같음.

- 南北物資交易을 위해 北韓住民과 接觸한 者が 부득이한 事由로 北韓住民과의 接觸前에 北韓住民接觸申告書를 제출하지 못하였거나, 書信, 電話 기타 가능한 方法으로 申告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事由 및 商談內容을 北韓住民接觸結果報告書에 기재하여야 함.

### 3. 接觸結果報告書 提出 등

- 北韓住民과 接觸한 者(居住旅券所持 在外國民 포함, 海外旅行中 特定한 目的없이 偶發的으로 北韓住民과 接觸한 者 除外)는 接觸 또는 歸國後 1週日 以內에 承認部處의 長 또는 在外公館長에게 北韓住民(代理人)接觸結果報告書를 제출하여야 함. 다만, 承認部處의 長 또는 在外公館長은 接觸者가

心身障礙 등 부득이한 事由로 接觸結果報告書를  
提出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面談, 電話申告,  
關係資料의 提出 기타 가능한 方法으로 接觸結果  
報告書 提出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

### Ⅲ. 人的 往來

#### 1. 南韓住民의 北韓訪問

##### 가. 承認申請

- 北韓을 방문하고자 하는 者(居住旅券 所持 在外 國民除外)는 訪問豫定日 4週前까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訪問目的에 따른 해당 主務部處를 경유 國土統一院長官에게 승인을 신청함.
  - 北韓訪問 承認申請書
  - 身元陳述書
  - 招請狀 原本 또는 訪問者의 身邊安全 및 無事 歸還 保障을 證明할 수 있는 書類
  - 協力事業 目的인 경우에는 협력사업에 대한 해당 主務部處의 承認(또는 事前承認)書類 寫本
  - 訪問證明書用 寫眞(訪問證明書 發給申請 6個月以內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탈모사진 가로 3.5cm, 세로 4.5cm) 2매
- 申請人이 海外에 나가 있는 경우에는 在外公館長에게 承認申請書類를 제출함.

## 나. 承認申請 處理

- 國土統一院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申請日로부터 2週이내에 北韓訪問 承認申請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議案으로 上程하여,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北韓訪問 承認與否를 결정하여 그 結果를 申請인에게 통보하고, 北韓訪問을 승인한 者에게 訪問證明書を 발급함.
- 海外에서 在外公館에 北韓訪問 承認을 申請한 경우에는 在外公館을 통하여 訪問證明書を 전달함.

## 다. 居住旅券 所持 在外國民의 北韓訪問 申告

- 居住旅券을 所持한 在外國民이 北韓을 訪問하고자 할 경우에는 在外公館長에게 北韓訪問申告書を 제출하여야 함.

## 2. 北韓住民의 招請

- 北韓住民을 南韓으로 초청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招請目的에 따른 해당 主務部處를 경유 國土統一院長官에게 承認을 申請함.

- 北韓住民招請承認申請書
  - 招請者 身元陳述書
  - 被招請者 人的事項
  - 協力事業 目的인 경우에는 협력사업에 대한 해당 主務部處의 承認(또는 事前承認)書類 寫本
- 國土統一院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申請日로부터 2週이내에 위의 신청사항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議案으로 上程하고, 同 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초청승인여부를 결정하여 申請人에게 통보함.

### 3.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 가. 承認 申請

- 南韓을 방문하고자 하는 北韓住民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國土統一院長官에게 承認을 申請함.
- 南韓訪問承認申請書
- 招請狀 寫本(招請이 있는 경우)
- 北韓當局의 南韓訪問 同意를 立證할 수 있는 書類
- 訪問證明書用 寫眞(南韓住民의 北韓訪問證明

書와 同一) 2대

-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承認申請은 바로 國土統一 院長官에게 하거나 板門店連絡事務所 또는 我側의 在外公館을 통해서 할 수 있음.
- 北韓住民의 南韓訪問 承認申請은 國土統一院長官으로부터 북한주민초청 승인을 받은 南韓의 招請者가 代行할 수 있음.

나. 承認申請 處理

- 國土統一院長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申請日로부터 2주이내에 북한주민의 남한방문 승인 신청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議案으로 上程하여,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심의결과에 따라 南韓訪問 承認與否를 결정하여 그 結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南韓訪問을 承認한 者에게 訪問證明書를 발급함.
- 海外에서 在外公館에 남한방문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在外公館을 통하여 방문증명서를 전달하며, 南韓의 招請者가 승인신청을 代行한 경우에는 南韓의 초청자를 통하여 방문증명서를 전달함.

- 國土統一院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出入場所에서 방문증명서를 交付할 수 있음.

#### 4. 其他 關聯指針

##### 가. 訪問期間

- 訪問期間은 60日 以內를 原則으로 하되,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國土統一院長官의 承認을 얻어 訪問期間을 延長할 수 있음.
  - － 訪問目的 達成을 위해 필요하다고 認定되는 경우
  - － 人道的으로 상당한 理由가 있다고 認定되는 경우
- 이미 訪問證明書を 발급받은 者가 訪問期間을 延長하고자 할 때에는 訪問期間 滿了前에 다음 書類를 구비하여 國土統一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함.
  - － 訪問證明書 記載事項 變更申請書
  - － 延長事由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
  - － 기타 國土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書類
- 北韓을 訪問中인 南韓住民이 訪問期間을 延長하



고자 할 때에는 板門店連絡事務所長을 통하거나 기타 가능한 方法을 통해 訪問期間 延長事由와 北韓當局의 同意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를 國土統一院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함.

#### 나. 出入場所

- 南韓을 訪問하는 北韓住民의 出入場所는 南北韓當局間에 별도의 合意가 없는 한 板門店 및 國際空港·港灣으로 함.

#### 다. 通過 節次

- 往來者는 出入場所를 통과할 때 出入國管理公務員이 행하는 身元確認 檢査와 稅關公務員이 행하는 携帶品檢査를 받아야 함.
- 南韓을 방문한 北韓住民이 所持한 北韓旅券이나 旅行證 및 第3國 入國査證은 出入場所에서 출입 檢査담당공무원에게 보관시켜야 하며, 歸還時 訪問證明書와 교환하여 반환함.

#### 라. 訪問證明書의 返納

- 北韓訪問을 마치고 歸還한 南韓주민은 訪問證明書에 기재된 방문기한에 상관없이 歸還後 1週日 以內에 國土統一院長官 또는 在外公館長에게 방

문증명서를 返納하여야 함.

- 南韓訪問을 마치고 歸還하는 북한주민의 訪問證明書는 출입장소에서 板門店連絡事務所長 또는 당해지역 出入國管理事務所長(出張所長)이 回收함.
- 訪問證明書を 발급받은 者가 南韓 또는 北韓訪問을 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國土統一院長官 또는 在外公館長에게 直接 返納하거나, 기타 가능한 方法을 통해 返納하여야 함.

마. 訪問證明書の 記載事項變更 및 再發給

- 訪問證明書を 발급받은 者는 訪問證明書の 內容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다음 書類를 첨부하여 國土統一院長官에게 記載事項의 變更을 申請하여야 함(訪問期間 延長의 경우에는 延長承認申請과 동시 처리).
  - 訪問證明書 記載事項 變更申請書
  - 訪問證明書 記載事項 變更事由를 증명할 수 있는 書類
- 訪問證明書を 발급받은 者는 방문증명서를 滅失

또는 毀損한 경우 기타 國土統一院長官이 認定하는 경우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再發給을 申請할 수 있음.

- 再發給 事由書
  - 舊 訪問證明書(訪問證明書を 滅失한 경우 제외)
  - 訪問證明書用 寫眞 2매
  - 기타 國土統一院長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書類
- 北韓을 방문중인 南韓住民이 訪問證明書の 記載事項變更 및 再發給 事由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板門店連絡事務所長 기타 가능한 方法을 통해 위에 정한 書類를 國土統一院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하며, 이때 訪問證明書記載事項變更申請書는 本 指針에 정한 書式을 따르지 않아도 무방함.

바. 訪問結果報告書 提出

- 北韓을 방문한 南韓住民(居住旅券 所持 在外國民 포함)은 歸還後 1週日以內에 訪問結果報告書를 작성하여 國土統一院長官 또는 在外公館長에

게 提出하여야 함. 다만, 國土統一院長官 또는 在外公館長은 訪問者가 心身障礙 등 부득이한 사유로 訪問結果報告書를 提出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面談, 電話申告, 關係資料의 提出 기타 가능한 方法으로 訪問結果報告書 提出을 대신하게 할 수 있음.

#### 사. 秩序 維持

- 北韓을 방문한 南韓住民이 訪問期間中 本人의 意思에 반하여 訪問目的과 다른 活動을 한 경우에 그 사실을 訪問結果報告書에 기재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關係機關의 調査에 응하여 疏명한 경우에는 그 活動에 대하여 責任을 묻지않을 수 있음.
- 國土統一院長官은 南韓을 방문한 北韓住民이 다음 사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強制歸還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訪問期間 延長承認없이 訪問期間을 超過한 者
  - 承認된 訪問目的과 다른 활동에 종사한 者
  - 犯罪行爲를 한 者
  - 國家安全 및 社會安定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者

## IV. 物資 交易

### 1. 物資 搬入・搬出 申請者

- 南北韓間 物資의 搬入・搬出 申請者는 對外貿易法에 의해 貿易業 許可를 받은 者로 하되, 商工部長官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貿易業 許可를 받은 者중 특정한 者를 지정하여 交易을 하게 할 수 있음.

### 2. 搬出入 承認申請

- 南北韓間 物資를 搬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當該 物品 및 去來形態에 대해서는 商工部長官의, 代金決濟方法에 대해서는 財務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함. 다만, 商工部長官과 財務部長官은 物品 搬出入節次 簡素化를 위하여 承認權限의 全部 또는 一部를 韓國銀行總裁 또는 外國換銀行(甲類)의 長에게 委任할 수 있음.
- 南北韓間 物資를 搬出入하고자 하는 者는 交易 對象物品에 따라 搬出入自動承認品目은 外國換

銀行(甲類)의 長에게(3일내 처리), 搬出入制限承認品目は 商工部長官에게 承認을 申請함. 다만, 搬出入自動承認品目일지라도 對外貿易法에 의한 統合公告에 의해 別途로 규정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同 規定의 要件을 充足한 후 外國換銀行의 長에게 承認을 申請하여야 함.

- 搬出入承認 關聯書類의 書式 및 記載方法은 商工部長官이 정함.
- 商工部長官 또는 外國換銀行(甲類)의 長은 搬出入을 승인한 경우 承認書上에 “南北韓 交易對象物品”임을 표시하여 申請人에게 교부함.

### 3. 交易對象物品의 公告

- 南北韓間 交易對象物品의 搬出入에 관한 自動承認品目・制限承認品目・禁止品目の 區分과 制限承認品目에 관한 制限內容에 대하여는 對外貿易法에 의한 輸出入公告와 統合公告를 準用함.

### 4. 搬出入承認實績의 報告 등

- 外國換銀行의 長은 搬出入承認事項을 申告받은 즉

시 전화, 팩시밀리 등을 이용, 商工部에 報告하여야 함.

## 5. 交易에 관한 調整 등

- 商工部長官은 交易에 관한 協定の 遵守나 秩序維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交易當事者에게 物品의 價格・數量・品質 기타 去來條件에 관한 조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商工部長官은 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交易擔當者에게 交易에 관한 事項을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6. 租 稅

- 北韓物品이 南韓으로 直接 搬入되는 경우에는 內國 物品移動으로 간주하여 關稅 및 輸入分 防衛稅를 賦課하지 않음.
- 第3國으로 輸出된 후 南韓에 반입되는 北韓物品이 關稅法 第34條 規定의 再輸入減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同 規定을 適用함.

## V. 協力事業

### 1. 協力事業推進의 事前承認申請

- 協力事業의 推進을 目的으로 北韓住民 또는 그 代理人과 協議하고자 하는 者는 協力事業에 관한 協議를 進行하기 전에 그 사업의 承認 또는 許可를 담당하는 部處에 協力事業推進計劃書를 제출하고 事前承認을 받아야 함.
- 承認部處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申請日로부터 30일 이내에 協力事業의 事前承認 與否를 결정하고, 이를 申請人에게 통보함.
- 承認部處를 特定할 수 없을 경우에는 協力事業推進計劃書를 國土統一院에 제출하도록 하고,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承認部處를 指定함.

### 2. 協力事業의 承認申請

- 北韓住民과 協力事業을 施行하고자 하는 者는 다음 事項을 具備하여 承認部處의 長에게 承認을 신청함.



- 協力事業者에 대한 상세한 紹介書
- 協力事業의 內容 및 方法
- 事業豫定期間
- 協力事業에 필요한 人員 및 資金計劃
- 北韓의 事業相對者와 協議書(意向書)
- 北韓當局의 確認書
- 其他 承認部處의 長이 協力事業의 審査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事項

### 3. 協力事業 承認審査

- 承認部處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申請日로부터 30日以內에 協力事業의 承認申請을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에 議案으로 상정하고,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結果에 따라 承認與否를 결정하여 申請人에게 통보함.

### 4. 協力事業者의 指定

- 承認部處의 長은 특히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協力事業者를 지정할 수 있음.

## 5. 協力事業 承認의 更新

- 承認部處의 長은 協力事業의 性格上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期間을 정하여 協力事業의 承認을 更新하도록 할 수 있음.

## 6. 協力事業 承認의 取消

- 協力事業者가 다음에 해당하는 行爲를 한 경우 承認部處의 長은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事業承認을 取消할 수 있음.
  - － 協力事業 承認以後 1年間(1年미만의 期間을 정하여 승인한 경우에는 承認期間內, 更新期間이 있는 경우는 更新期間內) 協力事業의 實績이 없는 경우
  - － 協力事業 施行中 南北韓間의 심각한 紛爭을 야기한 경우
  - － 協力事業 施行中 民刑事上 犯法行爲를 한 경우
  - － 協力事業의 內容이 承認申請時 記載內容과 다른 것으로 判明된 경우
  - － 承認部處의 長이 내린 調整命令에 따르지 않을 경우

## 7. 協力事業의 報告 등

- 協力事業者는 다음에 該當하는 時期에 承認部處의 長에게 사업추진내용을 報告하여야 함.
  - 單一 個別事業으로 事業期間이 1年以內인 경우에는 當該 事業이 終結된 때로부터 30日 以內
  - 1年以上 계속되는 事業은 每年度 1月 31日까지
  - 1年以上 계속되는 事業이 終結되었을 경우에는 當該事業이 終結된 때로부터 60日 以內
  - 更新期間이 정해져 있는 事業은 更新期間 終了 前 30日以內(承認 更新申請과 竝行)
- 承認部處의 長은 南北交流協力の 促進과 秩序維持 등을 위해 必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隨時로 協力事業者에게 北韓側 相對者와의 協議推進現況이나 事業現況報告를 받을 수 있음.

## 8. 協力事業의 調整

- 承認部處의 長은 協力事業이 南北交流協力の 促進과 秩序維持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審議를 거쳐 協力事業者에게 그가 施行하는 協力事業에 대하여 필요한 調整을 명할 수 있음.

## VI. 南北交流協力の 管理・支援

### 1. 承認申請人の 面談 등

- 承認部處의 長은 承認申請(申告)내용의 審査와 確認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申請人(申告人) 기타 관계인의 面談 또는 關係 證憑書類의 提出을 요구할 수 있음.

### 2. 承認申請(申告) 및 訪問證明書 등 受領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承認申請(申告)과 訪問證明書 등의 受領은 本人이 직접 하거나 代理人을 통하여 할 수 있음. 이때 代理人은 本人의 委任狀과 住民登錄證(또는 旅券이나 北韓當局이 발행한 身元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 寫本 및 代理人의 住民登錄證(또는 旅券이나 北韓當局이 발행한 身元을 확인할 수 있는 證明書)을 提示하여야 함.

### 3. 輸送裝備의 運行

- 南韓과 北韓間에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 등을 運行하고자 하는 者는 交通部長官의 承認을 얻어야 함.

- 船舶・航空機・鐵道車輛 또는 自動車 등과 그 乘務員이 出入場所에 出入하는 때에는 出入國管理法 第65條 내지 第72條의 規定을 準用함.

#### 4. 檢疫 등

- 北韓으로부터 들어오는 船舶・航空機・鐵道車輛・自動車 및 荷物は 檢疫調査를 받아야 함.
- 北韓으로부터 南韓으로 오는 者중 傳染病에 感染되었거나 感染이 疑心되는 者와 傳染病菌의 병원체에 汚染되었거나 汚染이 疑心되는 物件을 所持한 者는 國立檢疫所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申告하여야 함.

#### 5. 南北交流協力の 支援

- 政府는 南北交流協力を 增進시키기 위하여 必要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南北交流協力推進協議會의 議決을 거쳐 이 指針에 따라 행하는 南北交流協力を 위한 事業을 시행하는 者에게 필요한 支援을 할 수 있음.

## 6. 南北交流協力の 參與 制限

- 承認部處의 長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 南北交流協力の 參與를 制限할 수 있음
  -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基本指針』 및 本 細部施行指針에 정한 節次를 違反한 자
  - 刑事事件으로 起訴中인 자
  -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確定되지 않은 자
  - 國家의 安全이나 社會安定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자

##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특별선언

(노태우 대통령, 1988. 7. 7)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온겨레의 염원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새 공화국의 정책을 밝히려 합니다.

우리 민족이 남북분단의 고통을 겪어온 지 반세기가 가까와 옵니다.

분단의 역사는 우리 민족에게 슬한 시련과 고난을 주었으며, 민족의 정상적인 발전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남북분단의 장벽을 허물어 번영된 통일조국을 여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 겨레 모두에게 맡겨진 민족사의 소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분단된 남북은 동족상잔의 전쟁을 치루었으며, 남북으로 갈라진 분단 그날부터 오늘까지 서로가 서로를 불신·비방하며 서로를 적대시하는 고통스런 분단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북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었으나 민족통합은 우리의 책임아래 우리의 자주적 역량으로 이루

어야 합니다.

우리는 남북간에 화해와 협력의 밝은 시대를 함께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는 민족전체의 복지와 번영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이야말로 전쟁의 위험과 대결의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통일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여야 할 역사적인 시점이라고 확신합니다.

동포여러분,

우리가 아직 비극적인 분단현실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남과 북이 민족공동체라는 의식을 등진 채 서로를 대결의 상대로 여겨 적대관계를 격화시켜 온 데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의 공동체로서 그 속에서 삶을 영위하며 겨레의 힘과 슬기를 모아 시련과 도전을 극복하면서 빛나는 역사와 문화전통을 창조해 왔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이 함께 번영을 이룩하는 민족공동체로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야말로 번영된 통일조국을 실



현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이 길이 곧 민족자존의 길이며 민족통합의 길입니다.

이제 남과 북은 분단의 벽을 헐고 모든 부문에 걸쳐 교류를 실현해 나가야 합니다.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민족적 유대를 강화해 나갈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하나의 공동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대결의 관계를 지양해야 합니다.

북한이 책임있는 성원으로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그것이 북한사회의 개방과 발전을 촉진하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제사회에서 남북은 상호간에 서로의 위치를 인정하고 민족전체의 이익을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친애하는 6천만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 자주·평화·민주·복지의 원칙에 입각하여 민족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사회·문화·경제·정치공동체를 이룩함으로써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갈 것임을 약속하면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내외에 선언합니다.

1. 정치인, 경제인, 언론인, 종교인,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동포간의 상호교류를 적극 추진하며 해외동포들이 자유로이 남북을 왕래하도록 문호를 개방한다.

2.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기 이전이라도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이산가족들간에 생사·주소확인, 서신거래, 상호방문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주선·지원한다.
3.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 내부교역으로 간주한다.
4. 남북 모든 동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며 비군사적 물자에 대해 우리 우방들이 북한과 교역을 하는데 반대하지 않는다.
5. 남북간의 소모적인 경쟁·대결외교를 종결하고 북한이 국제사회에 발전적 기여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며, 또한 남북대표가 국제무대에서 자유롭게 만나 민족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서로 협력할 것을 희망한다.
6.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북한이 미국·일본 등 우리 우방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할 용의가 있으며 또한 우리는 소련·중국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한다.

나는 이상과 같은 우리의 조치에 대해 북한측도 적극 호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북한측이 이에 대해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 온다면 보다 전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아울러 밝혀둡니다.

나는 오늘의 이 선언이 통일을 향한 남북간의 관계발전에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6천만 우리 겨레 모두가 슬기와 힘을 모은다면, 이 세기가 가기전에 남과 북은 하나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공동체로 통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우리는 머지 않아 하나의 나라로 통일하는 위업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지침

1989년 7월 22일 인쇄

1989년 7월 27일 발행

발행 국토통일원

전화 : 736-7204

인쇄 휘문인쇄주식회사

전화 : 735-2523

국통조 89-7-61

〈비매품〉

